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4708 제출연월일: 2024. 10. 1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'정당한 사유'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2호 중 "1년 이내에"를 "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제2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 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2(사업시행자의 변경 및	제17조의2(사업시행자의 변경 및
취소)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7	취소)
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	
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(이하	
"사업시행자"라 한다)로 지정된	
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	
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	
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	2
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	
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	<u>정</u>
<u>년 이내에</u> 박람회 시설의 사	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
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	
지 아니한 경우	
3.・4. (생 략)	3.・4. (현행과 같음)